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41
----------	-----

2017.07.14.(금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26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7월 10일

(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차영)

가. 제안이유

○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자문역할에서 심의·자문기능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운영활성화 도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명 변경 : 조례명 중 “지원”을 삭제하여 명료화

▶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⇒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

○ 위원회 기능변경(안 제10조) : 자문→ 심의·자문 기능으로 확대

▶ 자문에 ⇒ 심의·자문에

○ 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변경(안 제11조) : 업무중심 직위명으로 변경

▶ (제2항)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⇒ 위원장은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

▶ (제3항) 도의 경제통상국장 및 바이오환경국장 ⇒ 도 과학기술·바이오 업무 담당국장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유지영)

○ ‘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자문역할에서 심의·자문기능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기능 재정립 및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

○ 다만, 기존 조례명에서 ‘지원’ 부분을 삭제한 이유와 제11조 제4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자문”을 “심의·자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”를 “위원장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의 경제통상국장 및 바이오환경국장”을 “도 과학기술·바이오 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당해직위”를 “해당직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부위원 장”을 “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</u>	<u>충청북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</u>
제1조~제9조(생략)	제1조~제9조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<u>자문</u> 에 응한다.	제10조(위원회 기능) ----- ----- ----- <u>심의 · 자문</u> -----.
1. ~ 6.(생략)	1. ~ 6.(현행과 같음)
제11조(위원회 구성)①(생 략)	제11조(위원회 구성)①(현행과 같음)
② <u>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</u>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.	② <u>위원장은 과학기술관련 업무를</u> <u>관장하는 부지사가</u> ----- -----.
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<u>도의 경제통상국장 및 바이오환</u> <u>경국장이</u>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과 학기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 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	③----- ----- <u>도</u> <u>과학기술 · 바이오 업무 담당국장</u> ----- ----- -----.
④당연직 위원은 <u>당해직위의 재임</u>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임 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. <u>다만, 보궐 위원의</u> <u>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</u> <u>한다</u>	④----- <u>해당직위</u> ----- ----- ----- -----.(삭제)

현행	개정안
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<u>부위원장이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⑤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<u>부위원장</u>----- -----.

관련법령 발췌

□ 과학기술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)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기업, 교육기관,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·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,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